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첨단 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 필요성 및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를 정비하여 융합학과 신설, 첨단학과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열 간 융합학과 신설 기준 완화(안 제2조의3 제8항 신설)

대학이 계열 간 융합학과를 설치, 운영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의 계열을 「고등교육법」 제6조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결손인원 활용에 따른 학과(학부)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기준 예외

마련(안 제2조의3 제9항 신설)

대학이 결손인원 활용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학과 등을 신설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입학정원의 증가에 대한 학과(학부)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편제완성연도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증원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타 학과 정원에서

감축할 것을 조건으로 함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3.23. ~ '20.5.4.)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비대상

다. 대학이 편입학 모집인원(여석)을 활용하여 첨단학과를 신·증설 하는 경우의 예외 마련(안 제2조의3 제10항 신설)

대학이 첨단학과를 신·증설 하는 경우, 해당 학과의 신입학 정원과 편입학 모집인원(여석)을 활용하여 학과 등을 신설하는 경우, 정원 증원에 필요한 4대요건 충족 없이도, 편입학 여석 범위 내에서 증원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마련

라. 첨단분야 대학원(학과 포함)을 신·증설하는 경우의 예외 마련 (안 제2조의3 제4항 개정)

대학이 첨단 분야 대학원(학과 포함)을 신·증설 하는 경우, 대학원 간 입학정원 자체조정에 대한 교육요건 기준 완화 및 석·박사 학위 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 교환 허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항까지”를 “제6항까지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대학원 간 자체조정은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 또는 90% 이상으로 유지하여도 된다.

⑧ 대학이 별표 1에 따른 둘 이상의 계열을 연계·융합한 학과 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 영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사·교원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계열을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⑨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고등

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의 교육과정에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편제정원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편제완성연도까지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학은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하는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다른 학과 정원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⑩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 ----- ----- 제6항까지 및 제8항 -----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법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 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에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신 설>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
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
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
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
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대학원 간 자체조정은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 또는 90% 이상으로 유지하여도 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대학이 별표 1에 따른 둘 이상의 계열을 연계·융합한 학과 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 영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사·교원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계열을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⑨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의 교육과정에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에 따라 편제정원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편제완성연도까지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학은 증설 또는 증원분에 해당하는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다른 학과 정원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⑩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1의6]

상호조정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대 상	증원 기준
1~2생략	
3.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	3.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별표 1의6]

상호조정 기준(제2조의3제6항 관련)

대 상	증원 기준
1~2(현행과 같음)	
3.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조정하는 대학	3.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3-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대학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정원 조정 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2명 이내에서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나.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감축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1명 증원하는 비율로 조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921